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702
----------	-------

발의연월일 : 2025. 9. 4.

발 의 자 : 이건태 · 조인철 · 조계원
이언주 · 이수진 · 진선미
박균택 · 염태영 · 최혁진
이성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노동자가 지게차에 강제로 묶인 채 끌려다니는 영상이 언론에 보도되며 국민적 공분을 사는 일이 발생했음.

현행법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해서는 아니된다는 차별금지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지난 5월, 한 달걀 공장에서 베트남 출신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인 간부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는가 하면, 지난 2월에는 한 축산농장에서 일하던 네팔 출신 외국인노동자가 생전 농장주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기숙사에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음. 이 같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반복되고 있어 괴롭힘과 차별을 막기 위한 실효적 제도 정비
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및 차별을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차별 금지에 관한 교
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의 법적 실효
성과 구속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
설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연 1회 이상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차별금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은 사용자 및 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의 이행 여부를 점검·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차별금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용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사용자 교육) ① (생략) <u><신 설></u>	제11조의2(사용자 교육) ① (현행과 같음) <u>②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연 1회 이상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차별금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은 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의 이행 여부를 점검·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u>
<u>② (생략)</u>	<u>⑤ (현행 제2항과 같음)</u>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2조(과태료) ① ----- ----- ----- ---
1. ~ 2의2. (생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2의3.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u>

3. ~ 10. (생략) ② (생략)	<u>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차별금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용자</u> 3.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